

보도	2026.4.15.(수) 14:00	배포	2026.4.15.(수)
담당부서	서민금융보호국 서민금융보호총괄팀	책임자	팀 장 이철진 (02-3145-8412)
		담당자	수 석 김영관 (02-3145-8416)

금감원,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 및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부업권·채권추심업권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

〈주요 내용〉

- 금감원은 대부업권·채권추심업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부업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,
 - 건전한 영업관행 및 준법의식을 확립하고,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당부하였음
- 주요 검사 지적사례 및 추심업무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불법추심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음
- 최근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잇따른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 신용정보 보안대책의 취약점을 자체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하고,
 -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임을 강조하였음

대부업권·채권추심업권 실무자 설명회 개요

주요내용	대부업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등의 주요 내용 및 검사 지적사례
일시	2026.4.15.(수) 14:00~17:00
장소	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
참석자	대부업자·채권추심회사, 대부금융협회, 신용정보협회 관계자 총 220명

1 주요 당부사항

- 김형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건전한 영업관행 및 준법 의식을 확립하고,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당부하였음
 - 특히,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 차주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,
 - 연체채권의 반복적 매각, 과잉추심 등 그간 문제가 되었던 영업 관행을 개선하도록 당부하였음
 - 또한,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·주식 투자를 위해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업권에 현역병 대상 영업을 자제하도록 촉구하였음
-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는 망분리 및 침입차단시스템,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등 보안 대책이 취약한 데 기인하므로,
 -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의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여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당부하고,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임을 강조하였음
-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·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,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*에 관심을 갖도록 당부하였음
 - * 협약 가입시 인센티브 : ①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대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(원칙은 펀드에만 매각 가능), ②새도약기금 가입 대부회사에 은행권 차입 허용 등

2

설명회 주요 내용

설명회 세부 일정

구 분	내 용	비 고
세션 I (법령교육)	■ 인사말	부원장보
	■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 사항	금융감독원 (서민금융보호국)
	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최근 이슈	대부금융협회
세션 II (사례교육)	■ 주요 검사 지적사례(대부업자·채권추심업자)	금융감독원 (서민금융보호국)
	■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 모범사례	신용정보협회
	■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주요 현안	금융감독원 (서민금융보호국)

□ (세션 I)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그간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, 법령해석 등을 안내

○ (대부업법)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·신설*, 등록요건 유지의무,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 상향(지자체→금융위), 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타 업체 겸직 제한 등 준수 필요

* 지자체 대부업자 : (개인) 1천만원 이상 → 1억원 이상, (법인) 5천만원 이상 → 3억원 이상
대부중개업자 : (대부중개사이트) 없음 → 1억원 이상, (그 외) 없음 → 3천만원 이상

- 반사회적 대부계약*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고, 불법 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, 해당 대부 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함

* 초고금리 계약(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), 폭행·협박·감금 사용, 성적 수치심 유발 등

- **(개인채무자보호법)** 연체 채무자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*, 과잉 추심 제한**,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규제 준수 필요

*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 미도래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금지(원금 5천만원 미만), 손금산입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 면제 등

** 추심착수 통지의무, 추심총량제, 추심유예제,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, 재매각 횟수 제한 등

- 특히, 채무조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* (원금 3천만원 미만)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당부

* 채무조정 요청의 부당한 거절 및 처리 지연 행위가 금지됨

- **(세션II)** 주요 검사 지적사례, 추심업무 관련 모범사례, 최근 해킹 사고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주요 현안 등을 설명

- **(검사 지적사례)** 대부업법 위반 및 불법추심 행위의 유형과 제재 수준 등을 안내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

- **(추심업무 모범사례)**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 모범 운영사례를 공유하여 추심업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

- **(정보보호)** 해킹 사고의 예방을 위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및 정보의 변경·훼손·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*을 수립·시행하도록 당부

* 접근권한 제한, 접속기록 관리, 침입차단(방화벽)·탐지시스템 운영,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등(신용정보업감독규정 [별표3]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)

-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누설 사실을 통지하고,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조치 필요

※ 1만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고 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함

3

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금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 실무자들이 최근 주요 현안인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
 - 또한, 실무자들이 대부업법, 신용정보법, 개인채무자보호법 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,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됨
-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부업권·채권추심업권이 개인채무자 보호 관련 규율을 준수하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임
 - 또한, 불법추심,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제재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